

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등록금 책정 현황

※ 관련 근거: 한경국립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1조·제127조

- ▣ 수업연한 경과자 중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,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수강신청을 한 학생

수강 학점	등록금 납입 금액
1학점~3학점까지	해당학기 등록금의 1/6 해당액
4학점~6학점까지	해당학기 등록금의 1/3 해당액
7학점~9학점까지	해당학기 등록금의 1/2 해당액
10학점 이상	해당학기 등록금 전액

※ 단, 학점 단위 등록금 납부 대상 학생은 학점당으로 산정한 등록금으로 책정함

- ▣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현장실습 교과목만 수강신청한 학생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: 100,000원(학기 단위)